

표준품셈 관리규정 제정

표준품셈관리규정 (83. 2. 23일)

제 1 조 (목적) 표준품셈관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토목(건설기계, 측량 포함) 및 건축부문 표준품셈(이하“품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품셈의 제정,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품셈의 제정) ① 품셈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.
② 품셈의 제정,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건설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토목품셈심의위원회와 건축품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4 조 (품셈관계자료의 수집 등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 7 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 매년 7월31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지방국토관리청장,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사무소장,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, 대한주택공사사장,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, 한국도로공사사장, 대한건설협회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회장 등(이하 “산하기관장”이라 한다)은 품셈에 대한 연구와 자체 자료수집을 하여야 하며, 제 7 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, 신자재 사용, 공법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장에게 특정한 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장과 제 7 조 각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·조사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장은 안전의 제출은 물론, 필요한 경우 제 7 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 단체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토목품셈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, 부위원장은 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이 되고, 건축품셈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, 부위원장은 동 건축부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장관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토목공사(건설기계, 측량부문 포함) 품셈에 관한 사항
2. 건축공사 품셈에 관한 사항
3. 기타 품셈 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회의개최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중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건설부산하 시행청 및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안전상정 및 송부) ① 연구소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과 그 심의자료를 사전 검토후 상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과 그 심의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각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 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기능별로 토목부문은 토목품셈 담당 토목기좌가 되고, 건축부문은 건축품셈 담당 건축기좌가 된다.

③ 서기는 국립건설연구소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.

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1조 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수당과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8조3항에 의한 의견진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분과심의위원회) 위원회에 제 7 조 각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심의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토목부문분과위원회 : 제 7 조 1 호의 해당 사항중 건

설기계 및 측량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.

2. 건설기계부분분과위원회: 제 7 조 1 호의 해당 사항 중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3. 측량부분분과위원회: 제 7 조 1 호의 해당 사항중 측량부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4. 건축부분분과위원회: 제 7 조 2 호의 해당 사항을 분장한다.

제14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각분과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 인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5 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.

② 토목부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, 부위원장은 동 재료시험과장이 되고 위원은 20 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건설기계부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, 부위원장은 동 기계시공과장이 되고 위원은

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측량부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, 부위원장은 국립지리원 측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⑤ 건축부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건설연구소 건축부장, 부위원장은 동 건축기준과장이 되고 위원은 25 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5조 (규정의 준용) 제 6 조, 제 8 조, 제 9 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등의 규정은 각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

제16조 (운영세칙)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회원 (준회원) 가입 안내

건축사법 제33조 제 2 항 및 당 협회 정관 제 7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분으로서 본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1. 접수기간 : 1983. 1. 4 부터
2. 자격기준 : 건축사면허소지자 (종전 2 급 포함)
3. 접수장소 :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 지부
4. 제출서류
 - 가. 입회원서 1 매 (당회 소정양식)
 - 나. 준회원 카드 2 매 (당회 소정양식)
 - 다. 반명함판사진 2 매와 증명사진 2 매
5.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 협회 총무부나 각지부 총무과로 직접 문의바랍니다.



대한건축사협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89
(전화 723-9491~2)